

제2008호

고양시보

2023년 9월 12일(화)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3-2332호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3-231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결정 (변경)(안) 재공람 공고 11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촉 대상자 중 “조정·건축·디자인 등의 전문가”를 삭제함(안 제2조제3항).
- 나. 제안평가위원회 의사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회계과 계약1팀(031-8075-2514)

- 팩 스 : 031-8075-490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제안서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호의”로, “고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평가위원(후보자)에”를 “평가위원(후보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관리 한다”를 “등록·관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종료될때”를 “종료될 때”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분의 2 이상”을 “평가위원 7명 이상의”로, “개회”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의할”을 “부치는”으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를 “배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제안서 제출자”로, “결정하며”를 “결정하되”로, “다른”을 “제안

서 제출자는 다른”으로,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듣거나 질의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 고양시장”을 “범위에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표(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로 한다.

제7조 중 “평가위원에 대하여”를 “평가위원에게”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로 한다.

제8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생년월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학력사항란 및 자격증 보유현황란 중 “취득년월일”을 각각 “취득 연월일”로 하며, 기타사항란의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200”을 “20”으로 한다.

생년월일	남 ☐ 여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회계과장 고 민 정
	팀 장 성 명	계약1팀장 이 무 근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연 희 031-8075-251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운영에</u> -----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고양시 <u>제안서 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u>호선</u>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u>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u>고양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4. (생략) 5. 조경·건축·디자인 등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6. (생략) ④ (생략) ⑤ <u>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된다.</u>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u>제안서 평가위원회</u>----- ----- ----- ----- -----<u>다</u> <u>만,</u>----- -----. ② -----<u>호선(互選)</u> --. ③ ----- -----<u>호의</u>----- ----- -----<u>고양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 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④ (생략)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전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료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② -----평가위원(후보자)으로-----

-----.

③ -----

-----등록·관리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⑤ -----

-----종료될 때-----
유지해야-----
-----.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
-----평가위원 7명 이상의-----
개 의(開議)-----.

② -----부치는-----

-----배부해야-----

-----.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듣거나 질의할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u>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u> <u>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u>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u>범위 내에서 고양시장이</u>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u>평가표(별지 제3호서식)</u>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u>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u>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④ -----<u>제안서 제출자</u> -----<u>결정하</u> <u>되-제안서 제출자는 다른</u>-----<u>들</u> <u>을</u>-----.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 -----<u>범위에</u> <u>서 시장</u>----- -. ② ----- <u>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u> <u>계표</u>-----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u>평가위원에게--</u> <u>-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u> <u>에 관한 조례」에</u>----- ----- -----. 제8조(시행세칙) ----- -----<u>운영에</u>----- ----- -----.
---	---

고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고양시 공고 제2023-1985호(2023.07.28.) 공람 공고된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재공람합니다.

2023. 9. 12.
고 양 시 장

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4,900,578	-	194,900,578	100.0	
주거지역	소계	43,263,021	증) 2,329	43,265,350	22.2	
	제1종전용주거지역	572,361	-	572,361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2,118,215	-	12,118,215	6.2	
	제2종일반주거지역	13,409,637	증) 2,329	13,411,966	6.9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30,243	-	12,730,243	6.5	
	준주거지역	4,432,565	-	4,432,565	2.3	
상업지역	소계	6,967,492	-	6,967,492	3.6	
	일반상업지역	5,867,791	-	5,867,791	3.0	
	중심상업지역	992,818	-	992,818	0.5	
	근린상업지역	106,883	-	106,883	0.1	
녹지지역	소계	145,090,066.5	감) 2,329	145,087,737.5	74.3	
	자연녹지지역	145,090,066.5	감) 2,329	145,087,737.5	74.3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 기정은 고양시 고시 제2023-140호(2023.04.14.)까지 반영한 사항이며 공업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제외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	탄현동 106-1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29	23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②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87	12	보조 간선도로	113	중1-97	탄현동 117-71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2009-160호	-
변경	중로	3	187	12	보조 간선도로	161	중1-97	탄현동 106-4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2009-160호	

2)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87	중로 3-187	- 변경 - 위치(중점) : 탄현동 117-71 → 탄현동 106-4 - 연장 : 113m → 161m (증) 48m	- 공공청사(탄현2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연장 변경 - 연장 변경에 따른 중점 변경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	탄현근린 공원	근린공원	일산서구 탄현동 92-1 일원	91,127.3	감) 2,917.0	88,210.3	경기도고시 제147호 (1974.05.16.)	

2)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변경 - 위치 : 일산서구 탄현동 산16 일원 → 일산서구 탄현동 92-1 일원 - 면적 : 91,127.3㎡ → 88,210.3㎡ - 감) 2,917㎡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중로 3-187호선 연장에 따른 공원 면적 축소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1)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A	공공 청사	-	일산서구 탄현동 106-1 일원	-	증) 2,329	2,329	-	

2)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공공청사	• 신설 - 면적 : 2,329㎡	• 현재 임차 사용중인 탄현2동 행정 복지센터의 주민편의 및 행정·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축 이전

3) 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A	공공청사	60% 이하	230% 이하	4층 이하

□ 기타사항

1.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9. 12. ~ 2023. 9. 26.)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72)
3.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